부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3. 18) 상정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3.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2005년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동산세제 개편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 구간 및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비과세 및 감면 규정 등을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변경함.(안 제25조 내지 제35조)

○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안 제37조)

○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함.(안 제42조)

○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 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함.(안 제68조제5항 신설)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안 제78조 내지 제89조 삭제)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함.
(안 제90조 내지 제10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세 결정과 관련 시 자체에서 설정 가능한가?	○ 시 자체에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체 설정 가능함.
○ 많은 세율인상과 세금납부에 따른 주민 홍보 대책은?	○ 현재, 대책을 수립 운영중이며 납기 전, 후하여 대대적인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예정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7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정이유

○ 2005년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부동산세제 개편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비과세 및 감면 규정 등을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변경함.(안 제25조 내지 제35조)

나.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안 제37조)

다.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함.(안 제42조)

라.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

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함.(안 제68조제5항 신설)

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78조 내지 제89조 삭제)

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함.(안 제90조 내지 제100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세조례”를 “부천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1조 제목 및 동조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5조중 “제33조 내지 제34조”를 “제32조의2 내지 제3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표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제44조”를 “제50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제167조”를 “제157조”로 한다.

제55조중 “법 제217조”를 “법 제210조”로 한다.

제6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2조중 “비과세대상”을 “미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절(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9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3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도시계획세”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제32조”를 “제92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94조중 “제32조와 제86조”를 “제32조”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5조중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109조제2항”을 “법 제109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과세기준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9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00조중 단서외의 부분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 단서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조중 “부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하며,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각각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중 “부천시통반설치조례”를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을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으로, 동조 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항 제2호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을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제1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37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제41조・제43조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동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제45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제57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조례 제1730호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7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시세조례	부천시 시세 조례
제3조(세목) ①(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종합토지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5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현 행	개 정 안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현 행	개 정 안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과세표준)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3(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8조(세율) ①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가. 주택: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200만원이하</td><td>1,000분의 3</td></tr><tr><td>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td><td>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tr><tr><td>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td><td>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0</td></tr><tr><td>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td><td>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0</td></tr><tr><td>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td><td>36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0</td></tr><tr><td>4,000만원초과</td><td>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70</td></tr></table>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영에서 정하는 도시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td><td>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5천만원이하</td><td>1,000분의 2</td></tr><tr><td>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td><td>10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 3</td></tr><tr><td>1억원초과</td><td>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tr></table>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이하</td><td>1,000분의 2</td></tr><tr><td>2억원초과 10억원이하</td><td>40만원+2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tr><tr><td>10억원초과</td><td>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4</td></tr></table>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제1목 내지 제3목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가.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제1목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 (생 략)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table><tr><td>과세표준</td><td>세율</td></tr><tr><td>4천만원이하</td><td>1,000분의 1.5</td></tr><tr><td>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td><td>6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tr><tr><td>1억원초과</td><td>24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td></tr></table>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신축년도, 연면적,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현 행	개 정 안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0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등) ① 법 제186조----------.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3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1. ---------- 부동산 2. ----------부동산 3. ---------- 부동산 4. ---------- 부동산 ②----------부동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서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table><tr><th colspan="2">영 업 용</th><th colspan="2">비 영 업 용</th></tr><tr><td>배기량</td><td>시시당 세액</td><td>배기량</td><td>시시당 세액</td></tr><tr><td>1,000시시이하</td><td>18원</td><td>800시시이하</td><td>80원</td></tr><tr><td>1,500시시이하</td><td>18원</td><td>1,000시시이하</td><td>100원</td></tr><tr><td>2,000시시이하</td><td>19원</td><td>1,500시시이하</td><td>140원</td></tr><tr><td>2,500시시이하</td><td>19원</td><td>2,000시시이하</td><td>200원</td></tr><tr><td>2,500시시초과</td><td>24원</td><td>2,000시시초과</td><td>220원</td></tr></table>1의2. ~ 6. (생 략)
② (생 략)</td><td>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서의 직권등재) ---------- 제32조의2 내지 제34조----------
----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
<table><tr><th colspan="2">영 업 용</th><th colspan="2">비 영 업 용</th></tr><tr><td>배기량</td><td>시시당세액</td><td>배기량</td><td>시시당세액</td></tr><tr><td>--------</td><td>--------</td><td>----------</td><td>--------</td></tr><tr><td>1,600시시이하</td><td>--------</td><td>----------</td><td>--------</td></tr><tr><td>--------</td><td>--------</td><td>1,600시시이하</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2조(세율) ①---------- --------- 1,000분의 2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①---------- ---------- 제50조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	제53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 ---------- ---------- ---------- ------- 제157조 ---------- ---------- ---------- ---------- ----------

현 행	개 정 안
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	제55조(수시부과) 법 제210조---- ---------- ---------- ---------- ----------.
제68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	제68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0조(세율) ①·②(생 략)	제70조(세율)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2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제72조(담배의 반출신고) ------ ---------- ----------

현 행	개 정 안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미과세대상 ---------- ----------.
제76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6조(가산세) ①----------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 및 법 제233의4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절 종합토지세	<삭 제>
제78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9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	

현 행	개 정 안
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현 행	개 정 안
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80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현 행	개 정 안
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 세를 분리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	

현 행	개 정 안
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7.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로서 도시지역안의 임야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8.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제8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

<table><tr><th>과세표준</th><th>세 율</th></tr><tr><td>2천만원이하</td><td>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td></tr><tr><td>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td><td>4만원+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3</td></tr><tr><td>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td><td>13만원+5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5</td></tr><tr><td>1억원초과 3억원이하</td><td>38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7</td></tr><tr><td>3억원초과 5억원이하</td><td>178만원+3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10</td></tr><tr><td>5억원초과 10억원이하</td><td>378만원+5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15</td></tr><tr><td>10억원초과 30억원이하</td><td>1,128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20</td></tr><tr><td>30억원초과 50억원이하</td><td>5,128만원+3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30</td></tr><tr><td>50억원초과</td><td>1억1,128만원+50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50</td></tr></table>
②제8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td><td></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이하</td><td>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td></tr><tr><td>1억원초과 5억원이하</td><td>30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td></tr><tr><td>5억원초과 10억원이하</td><td>190만원+5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5</td></tr><tr><td>10억원초과 30억원이하</td><td>44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6</td></tr><tr><td>30억원초과 50억원이하</td><td>1,640만원+30억초과금액의 1,000분의8</td></tr><tr><td>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td><td>3,240만원+5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10</td></tr><tr><td>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td><td>8,240만원+10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12</td></tr><tr><td>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td><td>3억2,240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15</td></tr><tr><td>500억원초과</td><td>6억2,240만원+50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20</td></tr></table> ③제80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 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현 행	개 정 안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82조(과세기준일 및 납기)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3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징수 등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84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6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	

현 행	개 정 안
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8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제9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

현 행	개 정 안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건축물 4.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부할 의무가 있다.
제92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92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 기 시작한 시기

현 행	개 정 안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 ----------토지·건축물 및 주택---------- 제92조----------. ②---------- 재산세 과세대장 ----------.

현 행	개 정 안
제9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32조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9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 ---------- ---- 제32조---------- --------- 재산세 ---------- ---------- ----------.
제95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이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3. (생 략)	제95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 ---------- ---------- ---------- ---------법 제109조제3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9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제9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td><td>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제97조(과세기준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과세대상</th><th>과세기준일</th><th>납 기</th></tr><tr><td>건축물</td><td>매년 6월 1일</td><td>매년 7월 16일
~7월 31일</td></tr></table></td><td>제97조(과세기준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td></tr>
<tr><td>제98조(세율) 법 제2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td><td>제9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9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재산세---------- ---------- ---------- -재산세---------- ---------.
제100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 ---------- ---------- -----법 제194조---------- ---------- ---------- ----------재산세---- ---------- ---------- ----------. 제10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 행	개 정 안
	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